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응시자격서류 제출 공통 유의사항

□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은 응시자격을 응시 전 또는 응시 회별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시험에 접수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이 무효처리 됨에 유의
 - *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Q-Net 시험일정 메뉴 참조,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 에도 서류 제출은 **상시로 가능**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에 한함)
- O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별표 4의2[별점3]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학력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필기시험 합격 가능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 : 필기시험일(다만, 필기시험을 여러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 ※ 응시자격 기준일 이내에 응시자격 미충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 사유임을 유의
- O 원본제출 : 응시자격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팩스 수령본, 스캔본 불가)
 -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Q-Net-국가자격시험-필기시험안내 메뉴 참조

□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방법** : 원서접수 후 Q-Net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제출 메뉴 : 원서접수 후 Q-Net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 * 온라인 제출은 별도 서비스 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수수료 발생
- **온라인 제출 서비스 기한** : 필기접수 초일~ 서류제출 마감 3일 전까지
 - * 응시자격서류(온라인) 제출기간 Q-Net 공지사항 참조

□ 응시자격서류 현장 제출 및 서류 제출 합격 여부 확인 방법

○ 현장 제출방법 :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 자격(필기)시험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단 지부/지사 주소 [별첨1] 참조

< 우편 제출 시 유의사항 >

- 우편 제출 시에는 아래 [서식1]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필수
 - 신청서 미 첨부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응시예정종목 확인 불가로 서류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자 중 4대 보험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작성 필수
- 서류 발송 후, 합격자 발표일~서류제출 마감일 전까지 [Q-Net]-[마이페이지]-[응시 자격]-[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기술자격)]에서 합격한 필기 회차, 종목의 응시자 격서류 합격 결과 내역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서류 마감일까지 응시자격 합격 결과가 확인 안 될 경우, 반드시 서류 제출처로 전화 문의
- <mark>공단 본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에서는 응시자격서류 심사 불가</mark>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로 제출 요망, [별첨1] 주소 참조)
 - ★ 응시자격서류 합격 결과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격서류 합격 여부 확인방법 : [Q-Net]-[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기술자격)]에서 합격한 필기 회차, 종목의 합격 결과가 [응시자격서류 합격 결과 내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확인

< 응시자격서류 제출 후 최종 서류 합격 여부 확인방법 >

- * 서류 합격 내역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
- ▶ 응시자격 서류 합격 내역이 없는 경우

○ 응시자격서류 합격 결과			
종목	회자	응시자격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 응시자격 서류 합격 내역이 있는 경우

○ 응시자격서류 합격 결과

종목	회차	응시자격
oo(산업)기사	2022년 정기 기사 제3회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 수험자 본인의 합격한 종목 및 회차의 합격 결과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 단, 합격 종목의 동일 및 유사분야의 동일 등급 기자격 취득자 및 기능경기 입상자 등의 근거로 서류 합격 처리 된 경우 내역 미표시 됨

2. 사례별 응시자격 서류 제출 유의사항

□ 확인1) 인정조건의 사례별 본인의 응시자격이 해당하는 사례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 확인2) 사례별 제출서류♡를 확인, 구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사례	제출서류	
	① 대학졸업자	· 졸업증명서 · 학위증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나 수료증명서	택일
학력	③ 1/2 이수자	・수료증명서 ^{다)} (4년제 기준 2학년 이상, 5년제 기준 3학년 1학기 이상 수료) ・재학증명서 ^{나)} (4년제 기준 3학년 이상, 5년제 기준 4학년 이상 재학)	택일
	④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증명서 라 · 학위취득증명서	택일
	⑤ 사업주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⑥ 보험 가입	(_{필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⑦ 보험미가입	경력증명서 ^{파)}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실확인서 +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택일
경력	⑧폐업사업장 바)	업무 내용 기재必*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확인서 +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⑨ 군 경력	· 병적증명서 ^{사)} · 군경력증명서(각군 참모총장 발급) · 공단 경력증명서 ^{마)사)}	
	⑩ 석사/박사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 연구경력 입증을 위한 자료(논문 등)	
	⑪ 실무경력	· 학위취득(예정)증명서(석사/박사) · 경력증명서 ^{마)}	
서비스	⑫ 실습수련	· 실습수련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성적증명서 (임상심리실습 과목이수)	

- 가)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팩스 수령본, 스캔본 불가), 종목 및 등급별 응시자격은 [별첨3] 참조
- 나) 재학증명서 상 반드시 재학학년, 학과/전공, 서류발급일이 기재되어야 함, 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제출
- 다) 수료증명서 상 반드시 수료학년, 학과/전공, 수료일자(또는 발급일자)이 기재되어야 함
 - ★ '응시자격 기준일' 이전의 수료일자(또는 발급일자)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 * 미기재 시 학력변동사항확인서(대학총장, 교무처장, 교학처장 날인) 제출

- 라) 학점인정증명서 제출 시 우측 하단에 "최종학점 인정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학점인정증명서 상의 최종학점인정일이 수험자의 응시자격 기준일 이전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 마) 2개 이상 회사 근무한 경우 각각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확한 경력기간, 담당업무,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담당업무는 "직무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기재에 관한 사항[아래 5번 항목] 내용 확인)
- 바) 폐업된 회사의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사업주 날인 경력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폐업된 회사의 사업주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본인 작성 가능하며 입증자 사실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제출
- 사) 병적증명서 발급 시 아래 여백에 주특기 코드 및 주특기 기간이 기재된 "군 경력"이 별도**[별첨5 참조]**표시되어야 함, 공단 경력증명서 작성의 경우 부대장이 발급한 서류여야 함(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 구체적 명시)
-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Q-Net-국가자격시험-필기시험안내 참조

3. 학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 학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 학력증명서 온라인 제출 유의사항 : 온라인 제출 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학력증명서에 한해 이용 가능(PC기반 Q-Net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학력증명서로 응시가능 여부 확인 후(학년 승급 여부 등) 제출
 - * [붙임3]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가능 대학 목록
- 본인 학과(전공) 등록 여부 및 응시가능 여부 필수 확인: [붙임8] 참조 필수
 - 등록 및 응시가능 여부 확인방법 : Q-Net-응시자격자가진단-학과선택 -학과검색에서 본인의 학과명을 검색하여 **학력증명서상의 학과(전공)명과** 편성 세부단위 명(과,학과,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은 <u>정확히 일치</u>* 및 해당학과로 응시가능여부 여부 확인 필수, 미등록 및 응시 불가 판정 시학과에 "관련학과 지정 신청" 요청
- * 학과(전공)는 학력증명서 상 기재되는 학과(전공)명으로 검색
- ** 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서 **211. 정보기술 분야에 해당종목**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응시예정자는 모든 학과에서 응시 가능함에 따라 관련학과 지정신청 불요
- *** 관련학과 지정신청 방법 : [붙임8]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지정신청 안내" 혹은 Q-Net-공지사항-"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신청 안내" 게시글 참조
- 심사 필수항목 확인 : 서류 제출 전, 학력증명서 상에 심사 필수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선택하여 제출(온라인 제출 시 확인 필수)

○ 제출서류별 심사 필수항목

제출서류	심사 필수항목	비고
졸업증명서, 학위증	①학과(전공 등), ②졸업(학위취득)일자	졸업자
재(휴)학증명서, 재적증명서	①학과(전공 등), ②재(휴)학년, ③서류발급일	졸업예정자, 최종학년재학
수료증명서	①학과(전공 등), ②수료학년, ③수료일자(또는 발급일자)	(산업기사) 대학의 1/2 이상의 과정 이수자
제적증명서	①학과(전공 등), ②제적학년, ③제적일자	
학위취득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①학과(전공 등), ②학위취득일자	
학점인정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①학과(전공 등), ②최종학점인정일	

- * 심사 필수항목이 학교 발급 증명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학력변동사항 확인서" [서식4] 서식에 필수 항목 기재 후, 증명서 발급자 직인(총장, 교학처장, 교무처장 등)을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공식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
- ** (산업기사) 대학의 1/2 이상의 과정 이수한 수험자는 1/2 이상 과정(학기,학년) 이수 수료증명서 또는 1/2 초과에 해당하는 학년의 재학증명서 제출
- 예) 4년제: 2학년(4학기) 수료증명서, 3학년 재학증명서

5년제: 3학년 1학기(5학기) 수료증명서, 4학년 재학증명서

6년제: 3학년(6학기) 수료증명서, 4학년 재학증명서

- *** [별첨3]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서 세부 응시자격 확인 필수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응시자격서류는 원본만 제출가능
 - * 다중 출력이 가능한 PDF형식 불가
 - 시스템 출력 시 학력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증명서 제출 시 시험일까지 "최종학점인정 완료" 여부 확인 필수

4. 경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 경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 유의사항 : 온라인 경력증명서비스는 PC기반 Q-Net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업 인사담당자와 사전협의(법인 범용 공인 인증서 사용가능 여부 및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기간 내 인사 담당자 승인 및 경력증명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제출 후 환불 불가
 - * [붙임4]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안내 참조

□ 경력증명 제출서류의 범위

-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서식2]을 기본으로 활용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
- O 별지 제7호 서식 외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범위
 - 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
 - * 단,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서류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구체적 기재에 관한 사항[아래 5번 항목] 내용 확인)
 - 나.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직렬 또는 직류"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1의2[별첨2]에서 정한 "직무분야(중직무명)가 포함"되는 경우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분한 (중)직무 분야 이외의 경우(시설직, 일반행정직 등)는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다.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근무처별 협회 소관 기술경력을 경력산정

-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2) 대한광물자원공사(舊대한광업진흥공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舊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 (4)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5) 한국전기기술인협회(舊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6)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7)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舊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8)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 (9)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10)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11)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13)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1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 (15)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16)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기술인정자격자 경력증명서
- (17)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 (18)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발급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 ※ 협회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요
 - ※ 상기 협회 이외 협회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
 -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21일을 1개월로 산정
 - ※ 근무처 경력기간 중 협회 인정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산정 불가에 유의

□ 일반 경력증명서 제출서류

- O 자영업자 : 소정 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O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의 제출 서류

구분	사업주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u>4대 보험가입증명서*</u>	·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4대 보험 미가입자	·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종사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 제출 시 입증자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단, 사업주는 사실확인서 입증자로 부적합	+ 4대 보험가입증명서* (미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 * (1) 고용보험가입확인서(또는 고용보험가입 내역이 포함된 직무능력은행 발급 '직무능력 인정서')
 - ②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③건강보험지격득실확인서 ④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택일 제출
- ▼민연금·건강보험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가능, 산재보험가입확인서는 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별첨6]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 참조

□ 군 경력의 인정 및 증명

구분		제출서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ин ни	Lar	① 병무청 발급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주특기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별점)
사병, 부사 장교 공통	•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 ▶ 병적증명서 상에는 반드시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군기술경력 시항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별점5 참조
- **☑ 부대장**이란 ○○○○부대장을 의미(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하는 것으로 소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
 - ※ 서비스 종목(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시, 병적증명서 및 군경력증명서가 아닌 업무내용이 기재된 부대장 이상 발급 경력증명서 첨부
 - O 사회복무요원의 경력인정
 -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5.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내용의 구체적 기재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의 심사 가능 조건
 - ① 전담 업무의 본질이 기술·기능분야인지의 확인 가능
 -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첨2]의 판단 가능
 - * (담당업무) 경력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수행한 주 업무 내용
- □ 담당업무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① 담당 업무 내용의 구체적 목적물 기재
 - ☞ 미 기재시 **직무 분야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예시)

- 가) 아파트 설비 유지보수 → 아파트 전기 설비 유지보수 업무
- 나) 부품 생산 →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
- 다) 생산 설비 운전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 라) 현장 시공 → **건설 배관** 현장 시공 업무
- 마) 현장 관리 → 선박 제조 '현장 안전관리' 업무(단순 안전관리는 직무분야 판단 어려울 수 있음)
- 바) 도면 설계 → 건축 배관 도면 설계 업무
- 사) 공사 관리 → **토목** 공사 **'감리'** 업무(단순 관리업무는 기술기능분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
- 아) 상가 건물 관리 → 상가 건물 내 '소방 시설 유지 보수' 업무
- * **"볼드체"** 본인 업무에 맞는 사항으로 기재

② 직위, 직책, 소속명이 아닌 업무로 명시

☞ 미 기재시 수험자의 **구체적 업무가 확정**되지 않음

예시)

- 가) 설비 오퍼레이터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 나) 생산 교대반장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 다) 안전관리 책임자 →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 라) 양극소재제조그룹, 조립기순그룹(소속이나 팀) → 배터리 양극소재 생산 **업무**
- 마)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유지보수 **업무**

③ 담당 업무의 구체적 기재

☞ 단순 담당 분야만 기재 시, **기술 기능 분야 여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예시)

가) 담당직무 : 품질 →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 업무

나) 담당직무 : 프로그램 → 연산 **프로그램 개발** 업무

다) 담당직무 : 폴리프로필렌 → **폴리프로필렌 생산** 업무

※ 위 내용은 구체적 기재에 대한 예시 및 안내사항이며, 공단 지부/지사에 서류 제출 시 실제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한 담당업무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 서류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별첨1]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주소 >

기관명	우편번호	주 소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서울서부지사	03302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강남지사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 T412타워 15층
강원지사	24408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울산지사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7
경남서부지사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경북서부지사	39371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2층
경인지역본부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인천지사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기북부지사	11801	경기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해인프라자 5층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경기남부지사	1756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2층, 3층
경기서부지사	144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463번길 69, 양지빌딩 2층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전북서부지사	54098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97, 풍산빌딩 2층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394번길 81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고1길 27
세종지사	30128	세종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 5층
충북북부지사	27502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14 4층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1644-8000

[※] 한국산업업인력공단 본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에서는 응시자격 서류심사 불가

[별첨2] 유사 직무분야 범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11의2)

집 해석법: 중직무분야에 속해있는 종목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이 필요

직무분야 분류		(왼편란의 직무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종목)		유사 직무분야 (경력)
02. 경영·회계·사무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의복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82. 디자인	14. 건설 중 141. 건축 19. 섬유·의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중 232. 목재·가구·공예
00. EM NE -PTE 00	083. 방송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09. 운전·운송	091. 운전·운송	14. 건설 중 146. 건설기계운전 24. 농림어업
13. 음식 서비스	131. 조리 132. 식당서비스	- 22. 식품가공
	141. 건축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2. 토목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4. 건설	143. 조경	16. 기계 17. 재료
11. 2. 2	144. 도시·교통	18. 화학 - 20. 전기·전자
	145. 건설배관	24. 농림어업
	146. 건설기계운전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15. 광업자원	151. 채광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6. 기계 중 164. 조선 17. 재료
	152. 광해방지	18. 화학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1/1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 · 설치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63. 철도	_ 14. 건설 17. 재료
 16. 기계	163. 절도 164. 조선	17. 세요 - 18. 화학
10. 7 7	164. 조선 165. 항공	20. 전기 · 전자
	166. 자동차	_ 21. 정보통신 중 212. 방송무선, 213. 통신 _ 25. 안전관리
		- 26. 환경·에너지
	167. 금형 · 공작기계	
	171. 금속 · 재료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
	172. 판금·제관·새시	15. 중립사원 중 151. 세종 16. 기계
17. 재료	173. 단조 · 주조	18. 화학
	174. 용접	□ 20. 전기·전자 □ 25. 안전관리
	175. 도장 · 도금	26. 환경·에너지 중 262. 에너지·기상
40 2 7	181. 화공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 16. 기계
18. 화학	182. 위험물	- 17. 재료 19. 섬유·의복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40 110 411	191. 섬유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9. 섬유·의복	192. 의복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18. 화학
20. 전기·전자	201. 전기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3. 방송 14. 건설 16. 기계
	202. 전자	17. 재료 21. 정보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211. 정보기술	모든 직무분야
21. 정보통신	212. 방송 · 무선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6. 기계 중 165. 항공
	213. 통신	16. 기계 중 165. 양동 20. 전기·전자
22. 식품가공	221. 식품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3. 음식서비스
	222. 제과·제빵	13. 음식서비스
	231. 인쇄 · 사진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32. 목재·가구·공예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14. 건설 중 141. 건축

	241. 농업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242. 축산	14. 건설
24. 농림어업	243. 임업	- 15. 광업자원
	244. 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중 261. 환경
	2 44 . 기념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25. 안전관리	251. 안전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의복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26. 환경·에너지
	252. 비파괴검사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16. 기계17. 재료18. 화학20. 전기·전자 중 201. 전기
	261. 환경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중 202. 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261-2. 환경 (자연환경관리, 자연생 태복원, 생물분류 및 토 양환경직종만 해당한다)	14. 건설 중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교통 24. 농림어업
	262. 에너지·기상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중 142. 토목 16. 기계 17. 재료 20. 전기·전자 중 201. 전기
	262-2. 에너지·기상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직종만 해당한다)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의복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262-3. 에너지·기상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직종만 해당한다)	

[별첨3]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의2)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술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 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 능 사 제한 없음

[비고]

- 1. "졸업자등"이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별첨4] 서비스분야 응시자격

종 목	응 시 자 격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제한 없음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제한 없음
임상심리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2. 임상심리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3.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임상심리사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졸업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전의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그졸업예정자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컨벤션기획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별표 11의2에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컨벤션기획사 2급	제한 없음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1.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 삭제 <2015.1.21.>
-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 기획사1·2급)을 취득한 사람
 - ※ 비고: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기준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가. 영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TE	PS	TOE	EFL	G-TE				
시험명	TOEIC	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СВТ	IBT	LP (Level 2)	FLEX	PELT (main)	IELTS	
기준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345점 이상	7.0점 이상	

나. 일본어

시험명	JPT	일검 (NIKKEN)	FLEX	JLPT
기준점수	650점 이상	700점 이상	720점 이상	2급이상

다. 중국어

시험명	HSK	FLEX	BCT	CPT	TOP
기준 점수	5급 이상과 회화중급이상모두 합격	700점 이상	듣기/읽기유형과 말하기/쓰기 유형 모두 5급 이상	700점 이상	고급 6급 이 상

라. 기타 외국어

시험명	러 시	아 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 어, 아랍어		
	FLEX	TORFL	FLEX		
기준점수	700점 이상	2단계 이상	600점 이상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비서 1급·2급·3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1급·2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한글속기 1급·2급·3급, 이러닝운영관리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제한 없음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 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시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 임상심리사 1,2급 응시자격 상세내용은 [붙임7] "임상심리사 1,2급 응시자격안내" 참조
- ** 임상심리사 2급의 석사과정 경력 증빙 시. 회벌 응시자격 기준일까지 4학기(2년) 이수 여부 확인 필수

- 병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인정가능 서류 : 병역사항란에 주특기코드, 주특기명과 주특기 복무 기간(기초군사훈련 제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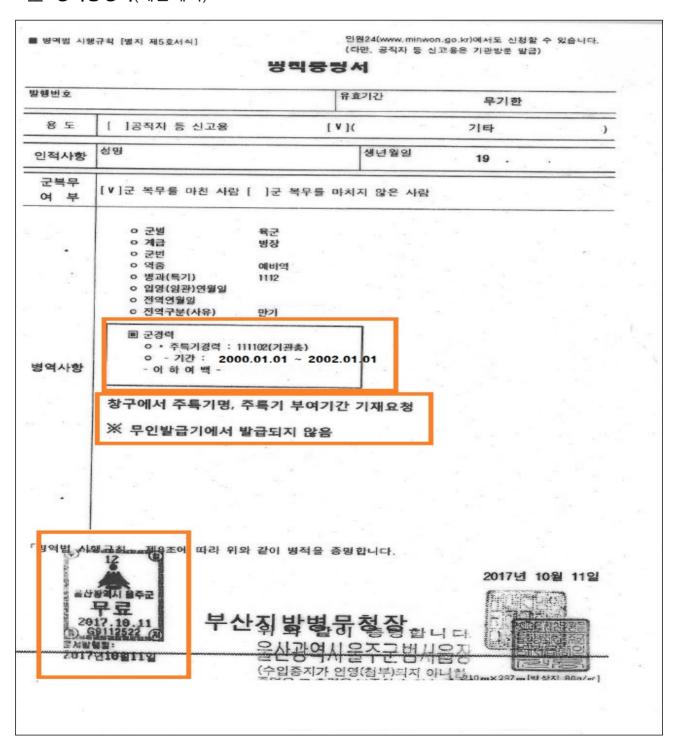
명시된 병적증명서

▶ 발급방법 : 구청·군청·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혹은 병무청 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며,

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주특기 경력 기재토록 요청(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팩스민원 신청,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 병적증명서(제출예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사실확인서 제출자에 한하여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 입증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또는 가림 처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입증인이 구청·군청·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방문 시 발급가능
- ▶ 그 외의 용도에 "자격시험제출용", "경력증빙용" 중 택일 기재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예시)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자격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명심하고 신청합니다.

	수험자	기재사항	(악력 및	N 경력	증명서	제술까	작성)
--	-----	------	-------	------	-----	-----	-----

종 목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몃 전화번호 휴대폰: 010-연락처 🏗 :

신청인

녆 서명 또는 인

붙 임 : 응시자격증명서류 부. 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2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응시자격에 관한 수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경력증명서 제출자만 작성)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본인의 경력증명의 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수험자에 한함

(서명 또는 인)

본인

[서식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30.>

경력증명서

※ 뒤쪽의 경력증당	※ 뒤쪽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앞쪽)				
	성명									주민등록	루번 <i>호</i>	
제출인	전화	번호										
(본인)	주소											
											-151 015 .110	
				재직	기간		I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체적으로 작성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증명사항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_					l행규칙	다 제14조제2형	낭에 따라	· 국가기술자 ²	격 검정
응시자격 증명	령을 위	하여	경력증명	성서를	제출합	합니디	ł.					
										년	월	일
							제출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곤	·의	장 ₹	하									
위 사항이 /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	니다.							
., ,,,,,,,,,,,,,,,,,,,,,,,,,,,,,,,,,,,,										년	월	일
										딘	2	2
기관명:							전화번호	<u> </u>				
주소:												
사업자등록변	선호:											
							대표자					(01)
수탁기곤	Lol :	자	ı - l									(인)
サギバモ	! - 1 - 1	Ö ↑	101						21∩mm × 207mm[⊞H	N.T. / 00 /	\ ec. * 7171/	22 / \1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자격 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 주소: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년 •월 •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실 확 인 서

※ 본 사실확인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자격명 :) 에 필요한 경력
사실이며, 아래의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경력 사실을 입중합니다.	

(입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입중인 인적사항

입 중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휴대전화		수험자와의 관계
주 3		
근 무 ㅊ	직 위	근 무 처 전 화 번 호

첨 부 :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 ※ 입중인: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입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처,	수험자 응시자격의 증명	<u>수집일로부터</u>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수험자와의 관계	진위여부 확인	<u>5년간</u>

- ※ 입증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험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 심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국가기술자격 응시를 위한 경력 사실

수험자 성명		생 년 월	일
근 무 직 장 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

신 청 인 홍길동 생 년 월 일 OOOO. OO. OO. 학과(전공) 이 이 이 (전공)

용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응시자격의 증명 <학력 변동사항>

① 학 (필수기재) 학 년 학적상태(휴학, 수료, 제적 등)

② 복 수 전 공 (선택기재)

~ DM.	100	
전공명	과정명	비고(학위 여부)
o'	(복수전공, 제2전공 등)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③ 전 과 (선택기재)

전과 전	전과 후	
OO과 O학년 수료(수료일자)	OO과 O학년 재학	

④ 학과명칭변경 (선택기재)

변경 전	변경 후
7· 한국산업 [©]	

※ 학과명칭 변경 시 변경 전/후 교과과정 첨부

담당직원	소 속	성 명	확 인
연 락 처			

000의 학력 변동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OO대학교 총장(교학처장) 적인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증명	병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	□재적증명서	□제적증명서	□학적부	□교과과정표
	□기타(직접 즉	낚성)		

작성 방법

- ① 성명, 소속, 전공명, 학과명칭 변경 사항 등은 한글로 작성하며, 생년월일, 학제, 학년. 졸업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증명서의 작성은 수기작성, PC작성 모두 가능하나, 서식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③ 학과(전공)은 인정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 A과에서 B과로 전과하였으나 A과 2학년 수료사실에 대한 학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을 A과로 작성
- ④ 변동 사항 ① 학적란은 필수기재란이며 학교측에서 인정하는 수험자의 학년과 학적상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 3학년 수료 후 휴학중인 수험자의 현재 학년이 4학년으로 인정되는
- ⑤ 변동사항은 ②,③,④ 항목은 수험자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4학년, 휴학 으로 작성

⑥ 학과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학과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이 경우 학과명칭 변경 전/후 교과과정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① 본 확인서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제적증명서, 학적부 등학교측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의 증명에 한하여 이용이가능합니다.
- ② 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국가기술 자격검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 응시자격서류 제출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 시험합격 취소, 응시자격 정지, 형사상 고발 조치 등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사본(복사, 스캔 등) 제출은 불가하며 증명서의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④ 허위 학력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학적부 등 수험자의 학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학교측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